영국 가금류 등록제 실시

영국은 2005년 12월 9일부로 가금류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영국 정부와 관련 산업계의 새로운 정책 방안의 일부분으로서 시행되는 가금류 등록제에 따라, 영국 내 가금류 가축 사육자는 2006년 2월 28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s, and Rural Affairs, DEFRA)는 50마리 이상의 가금류 동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등록제 시행은 2005년 새롭게 제정된 '조류독감 예방조치 법(The Avian Influenza Preventive Measures Regulation)'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50마리 이상의 가금류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육하고 있는 가금들을 등록해야 한다.

DEFRA의 장관 Bradshaw는 "현재 가금류에 대한 정보를 모아 둔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 등록제의 목적은 영국 전역에 걸쳐 산재하고 있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육되는 조류들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수집하는 데에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금류 가축들의 종류, 규모, 지리적 인접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금류 등록제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질병 예방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등록제를 통해서 축적하게 될 정보는, 잠재적인 질병 발생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둔 긴급조치계획(contingency planning)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농민연맹(National Farmers’ Union)’의 가금류 위원회 위원장인 Charles Bournes는 “이 등록제를 통해 기존의 긴급조치 수단들이 더욱 향상될 것이며, 우리는 등록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가금류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여 우리의 귀중한 가금류 관련 산업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질병 발생 상황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등록 대상이 되는 ‘가금류’란 사육, 가금육이나 가금류 알 생산, 기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생산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판매되는 조류들을 말한다.

자료: 영국, DEFRA

(김정섭 jskkjs@empal.com 010-7339-2546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